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특례 >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07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특례	3

I. 개요

1.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0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나경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26.

(3) 회 부 일 : 2025. 9. 29.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도록 하면서, 가구의 구성원, 재산의 소유 목적 등 개별가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구의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가 거주 목적으로 주거용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가구의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의 기본재산액은 기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6조의4제1항 신설).
- 나. 중증장애인 가구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준 비율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로 함(안 제6조의4제2항 신설).
- 다. 중증장애인 가구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 중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특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의 기본재산액을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액의 3배로 하고,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같은 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거용 재산 중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4(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특례) ① 제6조의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개별가구(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 가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액은 같은 항에 따른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6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가구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같은 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 중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2. 금융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해당 주거용 재산 외에 다른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동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동법 제6조의3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¹⁾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²⁾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 >

소득 인정액	구분	산식
	소득평가액 (제6조의3제1항)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유인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제6조의3제2항)	{재산 - <u>기본재산액</u> - 부채} × 소득환산율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중증장애에 따른 추가지출요인 등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연금 등은 소득 산정 시 제외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 시 제외하고 있으며, 가구 전체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만을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보장하는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1) ‘기본재산액’이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2) p.10 참고.

□ 이에 더해, 개정안은 중증장애인³⁾이 있는 개별가구(이하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재산액을 상향하고,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전후 비교 >

	현행	개정안
기본재산액 (서울거주 사례)	9,900만원 공제	29,700만원 공제 (현재 기준 300/100)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월 0.26% (현재 기준 1/4) ※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거용재산 중 3억원 이하는 공제

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은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발생하므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짐에 따라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⁴⁾할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재활 및 의료비, 교육비, 돌봄비용 등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개별가구보다 필요한 기본재산액 및 최저생계비⁵⁾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3)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할수록 수급액이 감소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노인, 한부모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9월 기준 전체 수급가구 중 약 15.8% 정도인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 특례를 인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로 인해 다른 취약계층의 특례 요구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6,826억원(8%) 증가한 9조 1,726억원, 의료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1,517억원(13.3%) 9조 8,399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⁶⁾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증가 추세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생계급여	5,264,772	6,014,148	7,541,072	8,489,981	9,172,676
의료급여	8,123,234	9,098,368	8,937,713	8,688,201	9,839,997

자료: 보건복지부(본예산 기준)

6) 생계급여 예산: 2022년 5조 2,647억 7,200만원, 2023년 6조 141억 4,800만원, 2024년 7조 5,410억 7,200만원, 2025년 8조 4,899억 8,100만원, 2026년(안) 9조 1,726억 7,600만원
의료급여 예산: 2022년 8조 1,232억 3,400만원, 2023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의 비율 >

(단위: 가구, %)

구분	총 기초생활수급 가구	전체 수급가구 중 장애인 수급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중복제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구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가구
2022	1,699,497	509,183	291,939 (17.2%)	227,261
2023	1,788,309	528,628	299,142 (16.7%)	239,426
2024	1,884,089	547,677	306,756 (16.3%)	250,836
2025.9	1,983,787	564,588	312,948 (15.8%)	261,556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중증장애인 가구라 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기본재산액을 3배로 확대하거나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25%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에 소득 및 재산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제도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일반의 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및 보호의 확대는 관련 제도를 통해 추진함이 제도·법 체계상 바람직함.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기본재산액을 상향하고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은 노인, 한부모 등 다른 취약 계층 및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중 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호의2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동산 및 입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가. 동산: 조사일 현재의 시가
 - 나.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권리: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9.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등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등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등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회사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
3. 「주택법」 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5.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호(戶)에 한하여 인정한다)

구분 \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	월 4.1%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	월 2.0%		

② 주거용재산의 범위, 처리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